

보수교육 면제·유예·비대상자 신청 요건 및 증빙서류 안내

○ 신청 요건 및 증빙서류

■ 2014년 ~ 2016년 신청 시

구분	대상자			증빙서류	
면제	1	신고일 기준 1년 내에 보건기관·의료기관 등에서 <u>보건의료정보관리사</u>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	1) 연간 6개월 초과 <u>보건의료정보관리사</u> 무관 업무에 종사한 자	보건기관 의료기관 근무자 • 재직증명서 1부 • 보수교육 면제확인 증명서 1부 (서식1 참조) • 직무기술서 1부 (서식2 참조)	
			학교 및 일반기업 근무자	• 재직증명서 1부	
			타면허 종사자 (2개 면허이상 취득자)	• 해당 면허증 사본 1부 • 재직증명서 1부	
			2) 연간 6개월 초과 미취업자	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, 미취업내역확인을 위해 직장피부양자, 지역세대원 등이 확인가능토록 발급)	
			3) 연간 6개월 초과 휴직자	• 휴직증명서 1부 (휴직기간 명시, 기관장 날인)	
	2	군 복무중인 자	4) 학생	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, 미취업내역확인을 위해 직장피부양자, 지역세대원 등이 확인가능토록 발급)	
			5) 해외 체류자	• 출입국 사실 확인서 1부	
			3	각 의료기사 등의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·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	• 재학증명서 1부
			4	영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	•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 사본 1부
			5	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	•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서 1부
유예	보수교육 대상이나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* 유예자는 유예 사유 해소 시 유예하였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.			•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(의사진단서, 기간 명시)	

■ 2017년 ~ 2018년 신청 시

구분	정의	신청요건	증빙서류				
보수교육 비대상자	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가 1년 미만 미종사 후 업무 미복귀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1번이라도 업무에 복귀한 적이 없는 자를 말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무관업무 종사자 : 재직(경력)증명서 1부, 보수교육면제확인증명서 1부 (서식1 참조), 직무기술서 1부 (서식2 참조) ■ 일반기업 및 학교 종사자(교수*포함) : 재직(경력)증명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수 겸임 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. *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전임교원은 겸임 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추가 제출 ■ 미취업자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, 미취업내역확인을 위해 직장피부양자, 지역세대원 등이 확인가능토록 발급) ■ 해외체류자 : 출입국 사실 확인서 1부 				
보수교육 면제	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 종사자면서 1년 미만 미종사 후 업무 복귀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면서 1년 미만 미종사 후 업무 복귀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연도에 미종사 이후 1번 이상 업무에 복귀한 자를 말함. - 해당년도 6개월 이상 미종사 기간 및 미종사 후 업무 복귀 관련 증빙 필수 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미종사 증빙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무관업무 종사자 : 재직(경력)증명서 1부, 보수교육면제확인증명서 1부 (서식1 참조), 직무기술서 1부 (서식2 참조) ■ 일반기업 및 학교 종사자 : 재직(경력)증명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교수는 보수교육 비대상자 (단,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수 겸임 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) ■ 미취업자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, 미취업내역확인을 위해 직장피부양자, 지역세대원 등이 확인가능토록 발급) ■ 해외체류자 : 출입국사실확인서 1부 </td> </tr> <tr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종사 증빙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의료기관 의무기록부서 종사자 : 재직(경력)증명서 1부 ■ 의료기관 타부서 및 일반기업 종사자 : 재직(경력)증명서 1부 + 직무기술서 1부 (서식3 참조) </td> </tr> </table>	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미종사 증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무관업무 종사자 : 재직(경력)증명서 1부, 보수교육면제확인증명서 1부 (서식1 참조), 직무기술서 1부 (서식2 참조) ■ 일반기업 및 학교 종사자 : 재직(경력)증명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교수는 보수교육 비대상자 (단,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수 겸임 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) ■ 미취업자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, 미취업내역확인을 위해 직장피부양자, 지역세대원 등이 확인가능토록 발급) ■ 해외체류자 : 출입국사실확인서 1부 	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종사 증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의료기관 의무기록부서 종사자 : 재직(경력)증명서 1부 ■ 의료기관 타부서 및 일반기업 종사자 : 재직(경력)증명서 1부 + 직무기술서 1부 (서식3 참조)
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미종사 증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무관업무 종사자 : 재직(경력)증명서 1부, 보수교육면제확인증명서 1부 (서식1 참조), 직무기술서 1부 (서식2 참조) ■ 일반기업 및 학교 종사자 : 재직(경력)증명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교수는 보수교육 비대상자 (단,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수 겸임 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) ■ 미취업자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, 미취업내역확인을 위해 직장피부양자, 지역세대원 등이 확인가능토록 발급) ■ 해외체류자 : 출입국사실확인서 1부 						
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종사 증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의료기관 의무기록부서 종사자 : 재직(경력)증명서 1부 ■ 의료기관 타부서 및 일반기업 종사자 : 재직(경력)증명서 1부 + 직무기술서 1부 (서식3 참조) 						

구분	정의	신청요건	증빙서류
	군 복무중인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 사병(사회대체복무 포함)으로 의무복무중인 경우 면제 가능 ○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면제 불가 	병적증명서 (또는 군입영사실확인서, 현역복무확인서)
	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학기 이상 수료 확인 시 면제 가능 	당해연도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
	신규 면허 발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면허 발급년도 면제 가능(면허증 발급일자 확인) 	면허증 사본
	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산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8년부터 적용 - 출산연도는 근무일수 상관없이 면제 	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(임신확인서, 휴직(육아,출산)증명서 등)
보수교육 유예	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 치료중인 자 ○ 외국에서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○ 해당연도(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) 육아휴직 	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: 입퇴원확인서, 육아휴직증명서 등 * 유예 사유 해소 시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, 보수교육 시간은 보수교육 비대상자의 업무 복귀 시 이수시간과 동일

■ 2019년부터 신청 시

구분	정의	신청요건	증빙서류
보수교육 면제	군 복무중인 자	○ 일반 사병(사회대체복무 포함)으로 의무복무중인 경우 면제 가능 ○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면제 불가	병적증명서 (또는 군입영사실확인서, 현역복무확인서)
	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	○ 1학기 이상 수료 확인 시 면제 가능	당해연도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
	신규 면허 발급자	○ 면허 발급년도 면제 가능(면허증 발급일자 확인)	면허증 사본
	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	○ 출산한 자	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(임신확인서 등)
보수교육 유예	해당 연도 보건(의료)기관 등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	○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미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무관업무 종사자 : 재직(경력)증명서 1부, 보수교육면제확인증명서 1부 (서식1 참조), 직무기술서 1부 (서식2 참조) ■ 일반기업 및 학교 종사자(교수*포함) : 재직(경력)증명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수 겸임 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함. *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전임교원은 겸임 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추가 제출 ■ 미취업자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, 미취업내역확인을 위해 직장피부양자, 지역세대원 등이 확인가능토록 발급) ■ 휴직자(육아휴직 포함) : 휴직증명서 등
	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	○ 의료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원 치료중인 자 ○ 외국에서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	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: 입퇴원확인서 등 출입국사실확인서 1부

※ **보수교육 유예자** : 유예 사유 해소 시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

보수교육 면제·비대상 확인 증명서

[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미수행 확인용]

이름		면허번호	
근무처		근무부서	
연락처	(사무실)		(휴대전화)
<p>[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집·이용하려는 항목 : 이름, 면허번호, 근무처, 근무부서, 연락처(근무처, 휴대전화) •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보수교육 면제·유예·비대상 신청 처리 및 사실 확인과 관련한 안내 •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: 면제·유예·비대상 신청 및 처리 관련 업무에 필요한 기간 <p>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·유예·비대상 신청 관련 안내가 불가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</p>			
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			
<p>[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(의료기사,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)]</p> <p>7. 보건의료정보관리사 :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의 분석, 보건의료정보의 전사(轉寫), 암 등록, 진료통계 관리, 질병·사인(死因)·의료행위의 분류와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·확인·유지·관리에 관한 업무</p>			
<p>[국가직무능력표준_의무기록분야_능력단위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정보 DB관리, 의료정보 서식 개발관리, 의료정보 분류, 의료정보 완전성 관리, 의료정보 전사, 질환등록, 의료정보 생성 활용, 의료정보보호, 진료정보 지원, 요양급여 정보관리, 의료정보관리 질 향상, 의료기관평가 지원 			
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미수행 확인			
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	미수행	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	미수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질병 및 수술분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요양급여 정보관리 · DRG 청구 및 심사 · 질병분류 검수 및 확인 - 환자진료정보 DB 구축·관리 	<input type="checkbox"/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진료통계 ▶ 암등록 ▶ 전사 	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진료기록의 분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 통계·조사·정보제공 - 의료기관평가 지원 - 의료정보관리 질 향상 - 의료정보(의무기록) 활용 지원 (임상연구지원) - 의료정보(의무기록) 완전성 관리 (미비기록 관리) 	<input type="checkbox"/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의무기록) 정보 유지·관리·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정보(의무기록) DB 관리 - 의료정보(의무기록) 서식 개발관리 - 의료정보보호(개인정보보호) - 의무기록 사본 발급 - 의료정보(의무기록) 보관·관리 (스캔 및 검수 포함) 	<input type="checkbox"/>
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미수행 기간		20__년 __월 __일 ~ 20__년 __월 __일	
<p>상기인은 본 기관의 재직(경력)자로서 위와 같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를 일체 수행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</p>			
			년 월 일
_____		_____	
기관장		직인	

※ 본 서식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수교육 면제·비대상자 증빙용 서식으로서, 귀 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의무기록 업무를 일체 수행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, 이후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고용 관련 평가 및 조사와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※ 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중 하나라도 수행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·비대상 처리가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재직(경력)증명서, 직무기술서(협회 양식)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장 직인을 득하기 어려운 경우 부서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
